

해외부패방지법 준수를 위한 협력업체 규칙

목 차

제 1 장 총 칙

- 제 1 조 (목적)
- 제 2 조 (규칙의 적용)
- 제 3 조 (타 규정 또는 규칙과의 관계)
- 제 4 조 (용어의 정의)

제 2 장 특수 협력업체에 대한 실사

- 제 5 조 (협력업체 분류)
- 제 6 조 (특수 협력업체에 대한 실사)

제 3 장 반부패를 위한 실행조치

- 제 7 조 (협력업체와의 계약)
- 제 8 조 (특수 협력업체에 대한 점검)
- 제 9 조 (문서보관 및 감사)
- 제 10 조 (교육)

제 4 장 신고 및 처벌

- 제 11 조 (보고 및 내부고발자 보호)
- 제 12 조 (처벌 및 인센티브)

부 칙

해외부패방지법 준수를 위한 협력업체 규칙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해외부패방지법 준수를 위한 협력업체 규칙(이하 “규칙” 이라고 함)은 해외부패방지법준수를 위한 규정(이하 “해외부패방지규정” 이라고 함) 제11조에 의거하여 에스케이건설주식회사(이하 “회사” 라고 함), 자회사 및 해외지사가 윤리적이고 전문적인 협력업체와 비즈니스(Business)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 및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규칙의 적용) ① 이 규칙은 회사, 자회사 또는 해외지사와 근로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여 단기, 상시, 정기 또는 임시 여부를 불문하고 노무를 제공하는 자(이하 “임직원” 이라고 함) 중 협력업체와의 계약 체결 등 거래에 관여하거나 협력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수행하는 등 협력업체와 빈번하게 또는 정기적으로 접촉을 하는 모든 임직원(이하 “협력업체 담당 임직원” 이라고 함)에게 적용된다.

②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이 규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1. 협력업체가 실질적으로 제3자 대리인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해외부패방지규정의 제3자 대리인에 대한 규정이 적용된다.
2. 협력업체가 대한민국 법에 의하여 설립되었으며, 국내사업 또는 사업기회를 위해서 회사, 자회사 또는 해외지사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3. 특수 협력업체가 아니면서 협력업체와의 계약금액이 금 1억원 미만인 경우.
4. 개발 또는 진행 중이거나 개발 또는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특정 사업 또는 사업기회를 목표로 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연구 또는 조사의 목적으로 협력업체를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회사, 자회사 또는 해외지사가 발주처 또는 기타 어떠한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어떠한 자금도 받지 않은 경우
5. 발주처가 입찰절차 또는 계약 수행 단계에서 선정한 협력업체로서, (i) 회사, 자회사 또는 해외지사가 협력업체의 선정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동의를 하거나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ii) 발주처의 입찰제안서 또는 이와 유사한 문서에 따라서 회사, 자회사 또는 해외지사가 협력업체와의 계약을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
6. 협력업체가 설립지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경우

③ 이 규칙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이 규칙의 일부 또는 부분적 적용이나 배제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해외부패방지법을 위반하지 않으며 특별하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주관부서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이 규칙의 예외를 허용할 수 있다.

제3조 (타 규정 또는 규칙과의 관계) ① 이 규칙과 해외부패방지규정간에 불일치가 있는 경우, 더 엄격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규정 또는 규칙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② 이 규칙과 회사 내 다른 규정 또는 규칙간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 이 규칙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다만, 협력업체이면서 합작투자 파트너인 경우에는 이 규칙뿐 만 아니라 해외부패방지법 준수를 위한 합작투자 규칙도 함께 적용을 받는다.

제4조 (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기타 이 규칙에서 정의하고 있지 않은 용어의 정의는 해외부패방지규정의 정의에 의한다.

1. “**공개 정보**”는 대중매체 또는 인터넷을 통해 수집 가능한 정보로서, 정관, 사업자등록증, 연례 보고서, 분기 또는 반기 보고서, 신용평가보고서 등을 포함한다.
2. “**특수 협력업체**”는 이 규칙의 제5조 제1항에 의거하여 특수 협력업체로 분류되는 협력업체를 말한다.

제 2 장 특수 협력업체에 대한 실사

제5조 (협력업체 분류) ① 계약 체결을 위한 협의 대상 후보인 협력업체와 관련하여, 협력업체 담당 임직원은 해당 협력업체가 특수 협력업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수 협력업체로 판단될 소지가 있다.

1. 협력업체가 회사, 자회사 또는 해외지사를 대신하여 외국공무원과 빈번하게 접촉할 합리적인 가능성이 있는 경우.
다만, 협력업체가 회사, 자회사 또는 해외지사와의 계약상 의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외국공무원과의 접촉이 수반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외국공무원이 서면으로 추천하거나 사용을 요구한 협력업체.
다만, 제2조 제2항 5호를 조건으로, 일반적인 비즈니스(Business) 관행에 따라서 발주처가 입찰제안서 또는 관련 문서를 통해 제공하는 선송인 협력업체 목록에 포함된 협력업체의 경우는 제외한다.
 3. 협력업체의 임직원이 외국공무원이거나, 외국정부 또는 외국공무원이 협력업체의 주주 또는 소유자이거나 협력업체에 대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다만, 협력업체가 국영기업이라는 사유 하나만으로 당연히 특수협력업체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4. 주관부서에 의하여 특수 협력업체로 지정된 협력업체
- ② 협력업체 담당 임직원이 본 조 제1항에 의한 검토를 수행한 결과 특수 협력업체로 판단되는 경우, 주관부서에게 신속하게 통지를 하여야 한다.
- ③ 본 조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 주관부서는 해당 업체가 특수 협력업체인지 여부에 대해서 결정을 한 후 협력업체 담당 임직원에게 통지를 하고, 협력업체 담당 임직원은 이 규칙에 따른 실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 (특수 협력업체에 대한 실사) ① 협력업체 담당 임직원은 특수 협력업체와 계약

체결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한 실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회사, 자회사 또는 해외 지사가 특수협력업체를 활용하려고 하는 사업 또는 사업기회에 대한 정보
 2. 특수협력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 및 필요성
 3. 특수 협력업체에 대한 기본정보 (설립지, 주사무소 소재지, 주주 또는 소유자, 주요 경영진)
 4. 특수협력업체 임직원 중 외국공무원이 있는지 여부 또는 외국공무원 또는 외국 정부가 특수 협력업체의 주주 또는 소유자이거나 협력업체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여부
 5. 특수 협력업체, 특수협력업체의 임직원, 자회사 및 자회사의 임직원, 주주 또는 소유자, 하도업체 또는 특수 협력업체를 대리 또는 대행하는 제3자가 지난 3년간 뇌물수수, 사기, 횡령 등의 부패행위(이하 “부패행위 등” 이라고 함)에 관여하였거나, 부패행위 등으로 인한 수사, 조사 또는 처벌을 받았거나, 부패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등의 소를 제기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
 6. 특수 협력업체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을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
 7. 특수 협력업체와 회사, 자회사 또는 해외 지사로부터 수탁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외국정부와 접촉하는 경우, 특수 협력업체를 대리 또는 대행할 제3자를 사용하였는지 또는 사용할 예정인지 여부
- ② 협력업체 담당 임직원은 실사 수행 과정에서 특수 협력업체로 하여금 특수 협력업체에 대한 질문서를(별지 제1호 서식, Questionnaire for Subcontractors and Vendors)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특수 협력업체와 관련된 공개 정보를 수집 및 검토하여야 한다.
- ③ 본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사를 완료한 후, 주관부서에게 협력업체에 대한 질문서를 포함한 실사 결과를 통지하여 해당 특수 협력업체에 대한 실사 완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주관부서는 필요한 경우 특수 협력업체에 대해 심화된 실사를 수행할 수 있다.
- ④ 본 조 제3항에 따라 주관부서로부터 실사 완료에 대한 확인이 있는 경우, 협력업체 담당 임직원은 계약서 체결 전 특수 협력업체로부터 해외부패방지법 준수 서약서(Declaration of Anti-Corruption Compliance, 별지 제2호 서식)의 서명을 받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 ⑤ 주관부서로부터 승인을 받은 특수 협력업체가 5년간 계속하여 회사, 자회사 또는 해외지사와 거래하거나 계약관계를 유지하는 경우, 협력업체 담당 임직원은 5년마다 본 조의 실사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 3 장 반부패를 위한 기타 실행조치

제7조 (협력업체와의 계약) ① 회사, 자회사 또는 해외지사가 협력업체에게 계약금 기타 금전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i) 모든 당사자의 서명이 완료된 유효한 계약서, (ii) 수탁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 및 보수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의향서 등 기타 문서로서 모든 당사자가 서명을 완료한 문서 또는 (iii) 영수증, 명세서 등 계약금 기타 금전의 지급에 대한 증빙서류가 있어야 한다.

- ② 회사, 자회사 또는 해외지사가 협력업체와 체결하는 서면 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3, 4, 5 및 6호는 계약서에 필수적으로 규정되어야 하며 (별지 제3호 서식), 불가피하게 수정 또는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1. 협력업체가 제공하는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 기간 또는 횟수 등
 2. 보수 금액 및 지급 조건과 방법
 3. 협력업체의 해외부패방지법 준수의무
 4. (협력업체에 대한 질문서를 통해 공개된 사항을 제외하고) 협력업체의 임직원은 외국공무원이 아니며, 외국공무원 또는 외국정부가 협력업체의 주주 또는 소유자이거나 협력업체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에 대한 보증의무
 5. 협력업체가 계약상의 부패방지조항 또는 해외부패방지법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회사, 자회사 또는 해외지사의 계약 해지권, 손해배상청구권, 발주처, 정부기관, 국제기구 등에게 위와 같은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권리 및 감사권
 6. 협력업체, 협력업체의 임직원, 자회사 및 자회사의 임직원, 주주 또는 소유자, 하도업체 또는 특수협력업체를 대리 또는 대행하는 제3자가 회사, 자회사 또는 해외지사와의 계약 또는 계약의 대상이 되는 사업과 관련된 부패행위 등으로 인한 수사, 조사 또는 처벌을 받았거나 피소된 경우, 협력업체가 회사, 자회사 또는 해외지사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서면 통지해야 하는 의무
- ③ 주관부서는 제2항에 열거된 사항 이외에 협력업체의 해외부패방지법 준수의무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계약서에 규정할 것을 협력업체 담당 임직원에게 권고할 수 있다.
- ④ 협력업체 담당 임직원은 계약서 체결 전 협력업체에게 해외부패방지규정을 제공하고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해외부패방지규정의 적용을 받을 것을 제안하여야 한다. 협력업체가 해외부패방지규정의 적용을 받기로 합의한 경우, 이와 같은 사실을 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 ⑤ 관련 임직원은 계약서 체결 전 협력업체로부터 해외부패방지법 준수 서약서 (Declaration of Anti-Corruption Compliance, 별지 제2호 서식)의 서명을 받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단, 제6조 제4항에 따라 해외부패방지법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특수 협력업체는 예외로 한다.
- ⑥ 특수협력업체와 협의를 완료된 계약서는 (협력업체와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체결 전, 본 조 2항의 준수 여부와 관련하여 주관부서의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한다.

제8조 (특수 협력업체에 대한 점검) 협력업체 담당 임직원은 특수 협력업체가 계약서상 부패행위금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 또는 확인하여야 하며, 특수

협력업체가 계약서상 부패행위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즉시 주관부서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문서보관 및 감사) ① 협력업체와 관련된 거래 및 회사의 자금 지출에 대한 사항은 구체적인 사실에 부합하도록 정확하고 명확하게 문서에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하며, 내부회계관리규정 등 회사의 관련 사규에 따른다.

② 협력업체와 관련된 거래에 대한 감사는 내부감사규정 등 회사의 관련 사규에 따른다.

제10조 (교육) ① 주관부서는 협력업체 담당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추가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또한 주관부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력업체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내용은 해외부패방지법, 해외부패방지법 준수를 위한 규정 및 규칙의 주요사항, 업무 수행상 유의사항 및 유사 사례를 중심으로 한다.

③ 교육 실시 후 교육참가서를 사용하여 강사, 교육내용, 교육자료, 일시 및 장소, 교육참가자에 대한 내역을 기재하고, 교육참가자들로부터 서명을 받아야 한다.

제 4 장 신고 및 처벌

제11조 (보고 및 내부고발자 보호) ① 임직원은 해외부패방지법 또는 이 규칙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되거나 위반을 의심할 만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자신의 상급자, 주관부서 또는 감사업무 담당 부서에 반드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본 조 제1항에 따라 보고하는 대신 주관부서에 익명 보장을 조건으로 보고할 수도 있으며, 주관부서 또는 감사업무 담당 부서는 이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진행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회사, 자회사 또는 해외지사는 해외부패방지법 또는 이 규칙의 위반 사실 또는 위반이 의심되는 사실을 보고한 임직원을 상대로 고용관계 또는 기타 어떠한 면에서도 불이익을 주지 않아야 한다.

제12조 (처벌 및 인센티브) ① 직무 수행 과정에서 해외부패방지법 또는 이 규칙을 위반한 임직원은 회사 또는 자회사의 상벌규칙에 따른 징계조치를 받게 된다.

② 주관부서는 해외부패방지법 또는 이 규칙을 모범적으로 실천하였다고 평가되는 임직원에게 대하여 인사상 또는 금전적 혜택을 부여하도록 회사에 건의하거나, 인사상 불이익에 대해서는 시정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다. 구체적인 평가 및 포상에 대해서는 상벌규칙에 따른다.

부 칙

1. 이 규칙은 2014 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칙은 2022년 3월 1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